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5가단52081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7. 10. 26.

판결 선고2017. 11.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1,029원 및 그중 45,561,069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5. 1. 23.자 재산분할계약을 59,156,151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59,156,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5. 22. 피고 주식회사 A와 위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변제를 원금 기준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3. 5. 22.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원고가 구상권을 보전,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와 같은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2012. 5. 2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상의 보증기한을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오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3. 24.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고, 2015. 6. 2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45,561,0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2015. 6. 24. 대위변제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정한 상환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추가보증료는 71,010원이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48,95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45,881,029원(=대위변제금 45,561,069원 + 추가보증료 71,010원 + 보전비용 248,95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5,561,0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11. 10.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1,029원 및 그중 45,561,069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9, 10, 11호증, 을다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는 피고 B의 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의 2015. 1. 23.자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495호로 피고 C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1973. 5. 15. 피고 B과 혼인하였다가 피고 B의 외도 등으로 2015. 1. 19. 협의이혼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시가 15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10,000,000원 ÷ 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과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서산시 D 전 1283m² 등 175,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95,840,000원, 중소기업은행진흥공단에 대한 130,000,000원, 합계 220,84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140,000,000원, 외한카드에 대한 5,237,000원 상당의 주채무 등 합계 366,07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통하여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집행가능한 재산을 없도록 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2017. 6. 29. 기준 채권액 59,156,151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 해당액인 위 59,156,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2015. 6. 24.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있었던 2015. 1. 23. 이후이지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이미 그 이전인 2012. 5. 22.에 성립되어 있었고, 2015. 3. 24.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5. 6. 24.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김포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피고 C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피고 B명의의 시가 15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뿐이다. 피고 B은 이혼 당시 시가 20,000,000원 상당인 서산시 D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피고 B이 상속받은 재산인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참조), 재산분할이 기본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위 토지를 피고 B이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 B과 피고 C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B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140,000,000원의 채무가 포함됨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여기에 더하여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진흥공단에 대한 채무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B과 C가 이혼함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고 B 명의로 있는 시가 15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140,000,000원의 채무뿐으로, 결국 순재산 15,000,000원 상당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4. 30. 설정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2014. 5. 20.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40,000,000원이었던 사실(위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피고 B의 채무이다), 피고 C가 2015. 4. 28. 계약인수를 통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B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피고 C가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C는 15,000,000원(=적극재산의 가액 155,000,000원 - 소극재산의 가액 140,000,000원)의 순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재산분할에 청산적 요소와 함께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의 요소가 포함되는 점, 피고 B와 피고 C의 혼인기간이 40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가 피고 B의 외도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을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는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진

별지